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2016. 10. .
발 의 자	김상조 의원 외 5명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조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김상조 · 윤종호 · 김인배 · 김정곤
양진오 · 정근수의원(6인)

1. 제안이유

-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방안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새로 추가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존 “벤처기업” 정의 규정을 변경

나. 기금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상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5년간 존속기한 신설

**다.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 20조, 21조)**

- 관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금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펀드를 지원하여 위험부담 감소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표 달성

라.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26조)

- 기존 조례에 있는 기금운자심의위원회 기능과 명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맞지 않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조항 신설
(안 제26조제2항)**

-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법령에 근거한 조항 신설

바. 상위법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안 2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

사. 상위법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 내용 변경(안 28조)

- 결산보고서 작성 :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 80일
-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 :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6억원 반영 계획
- 다. 부서의견 : 해당없음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제6조제1항 중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설정하여 관리한다"를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

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
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방법 및 관리) 제20조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
약에 따른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관계인사
3. 구미시의회의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투자통상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담당

제2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을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u><삭제></u>

<신 설>

13. (생 략)

<신 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설정하여 계리한다.

② 기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 은행의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1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0조(융자대상) ① (생략)

② 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융자 받은 운전자금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운전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선정·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 ① (생략)

② 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융자받은 시설자금을 제1항

③ 제2항에 따른 -----

-----.

<삭제>

제10조(융자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삭제>

제12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5조(융자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삭제>

제1호,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5장 보칙

<신설>

<신설>

<신설>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 ① 시장은 제10조,제15조,제

제16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방법 및 관리) 제20조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4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5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삭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중소기업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

2.취급 금융기관의 관계인사

3.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2인

4.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경제통상국장

2.기금출납원: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6조(기금의결산및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

<신 설>

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관계인사

3. 구미시의회의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투자통상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담당

<신 설>

제27조 (생 략)

제28조 (생 략)

제2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
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
아야 한다.

제29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30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 ④ 생략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제2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21조(지원방법 및 관리)에 따라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라 출자금 추계
-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지방기업)」 선정 조합인 케이엔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에 3년간 20억 출자
* (출자자)한국벤처투자(주) ⇒ (운용사)(주)케이엔투자파트너스
- 추계기간은 2016년(2회 추경)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출자금	600,000	800,000	600,000			2,000,000
	소계(b)	600,000	800,000	600,000			2,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600,000	800,000	600,000			2,000,000
민간							
기타							
합계		600,000	800,000	600,000			2,000,000

5. 부대의견

- 기금 신설로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이차보전금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
- 기금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투자수익 회수금 등 세입발생 으로 추계금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 기업사랑본부 임애리(054-480-603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출자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2. 운용조합 : 케이엔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 펀드조성액 : 100억원(모태펀드 50, 경북도 20, 구미시 20, 자부담 10)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0	30	40	30
국비(모태펀드)	50	15	20	15
경 북 도	20	6	8	6
구 미 시	20	6	8	6
자 부 담	10	3	4	3

※ 자부담 : 케이엔투자파트너스(펀드운용사)

- 존속기간 : 8년(투자기간 3년 포함) ⇒ 투자자금 회수 완료시 청산
- 투자대상 : 도내(구미시) 벤처기업 중점
(바이오/헬스케어, 메카트로닉스/신소재, 모바일 등)

<구미시 투자 대상사업>

- 신성장동력산업(국방, 탄소, 의료기기등) 육성을 위한 우수기업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수도권 기업의 투자유치